초읍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지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초읍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com)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초읍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 홈페이지(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시행조치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비접촉 체온기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초읍 월드메르디앙 에듀포레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51-554-2979)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1.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아파트에 입주자(추가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7년간 재당첨 제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23.(목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2910181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11.(수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285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부적격 당첨 또는 무효처리 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적용받지 아니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7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06월 28일(화요일)	07월 04일(월요일)	07월 05일(화요일) ~ 07월 06일(수요일)	07월 7일(목요일) ~ 07월 8일(금요일)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10:00~17:00)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당사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750-33, 2층)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청약과열지역 7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당첨 후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29-1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12층 4개동 116세대(도시형생활주택 20실 포함) 중 아파트 총 96세대,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61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4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민영 주택	2022910181	01	049.9929B	49B	4	103	202, 402, 702, 802
		02	059.7592A	59A	32	101	201, 202, 301, 302, 402, 501, 502, 602, 701, 702, 801, 901, 1001
						102	202, 302, 402, 602, 702, 802, 902, 1102, 1202
						103	304, 404, 704, 804, 805, 904, 905, 1005, 1104, 1205
		03	059.9022B	59B	11	102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1101, 1201
		04	059.6159C	59C	13	103	201, 203, 301, 501, 503, 601, 603, 701, 703, 801, 803, 1001, 1103
		05	097.8993A	97A	1	103	102
	합 계				61	-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com) 사이버모델하우스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입주지정 기간 내)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계약시	22.08.16	22.10.04	23.01.02	23.04.03	23.07.03	23.10.02	24.01.02	
49B	10	103동 2호	2~3층	2	53,224,864	255,725,136	-	308,950,000	1000,0,000	20,895,000	30,895,000	30,895,000	30,895,000	30,895,000	30,895,000	30,895,000	92,685,000
			4~6층	3	53,224,864	259,815,136	-	313,040,000	10,000,000	21,304,000	31,304,000	31,304,000	31,304,000	31,304,000	31,304,000	31,304,000	93,912,000
			7~9층	3	53,224,864	263,905,136	-	317,130,000	10,000,000	21,713,000	31,713,000	31,713,000	31,713,000	31,713,000	31,713,000	31,713,000	95,139,000
			10~11층	2	53,224,864	270,045,136	-	323,270,000	10,000,000	22,327,000	32,327,000	32,327,000	32,327,000	32,327,000	32,327,000	32,327,000	96,981,000
59A	54	101동 1,2호 102동 2호	2~3층	6	63,622,645	306,797,355	-	370,420,000	10,000,000	27,042,000	37,042,000	37,042,000	37,042,000	37,042,000	37,042,000	37,042,000	111,126,000
			4~6층	9	63,622,645	311,637,355	-	375,260,000	10,000,000	27,526,000	37,526,000	37,526,000	37,526,000	37,526,000	37,526,000	37,526,000	112,578,000
			7~9층	9	63,622,645	323,737,355	-	387,360,000	10,000,000	28,736,000	38,736,000	38,736,000	38,736,000	38,736,000	38,736,000	38,736,000	116,208,000
			10~12층	8	63,622,645	335,847,355	-	399,470,000	10,000,000	29,947,000	39,947,000	39,947,000	39,947,000	39,947,000	39,947,000	39,947,000	119,841,000
		103동 4,5호	2~3층	4	63,622,645	287,427,355	-	351,050,000	10,000,000	25,105,000	35,105,000	35,105,000	35,105,000	35,105,000	35,105,000	35,105,000	105,315,000
			4~6층	6	63,622,645	294,687,355	-	358,310,000	10,000,000	25,831,000	35,831,000	35,831,000	35,831,000	35,831,000	35,831,000	35,831,000	107,493,000
			7~9층	6	63,622,645	301,957,355	-	365,580,000	10,000,000	26,558,000	36,558,000	36,558,000	36,558,000	36,558,000	36,558,000	36,558,000	109,674,000
			10~12층	6	63,622,645	306,797,355	-	370,420,000	10,000,000	27,042,000	37,042,000	37,042,000	37,042,000	37,042,000	37,042,000	37,042,000	111,126,000
59B	11	102동 1호	2~3층	2	63,774,838	314,275,162	-	378,050,000	10,000,000	27,805,000	37,805,000	37,805,000	37,805,000	37,805,000	37,805,000	37,805,000	113,415,000
			4~6층	3	63,774,838	333,785,162	-	397,560,000	10,000,000	29,756,000	39,756,000	39,756,000	39,756,000	39,756,000	39,756,000	39,756,000	119,268,000
			7~9층	3	63,774,838	341,105,162	-	404,880,000	10,000,000	30,488,000	40,488,000	40,488,000	40,488,000	40,488,000	40,488,000	40,488,000	121,464,000
			10~12층	3	63,774,838	348,415,162	-	412,190,000	10,000,000	31,219,000	41,219,000	41,219,000	41,219,000	41,219,000	41,219,000	41,219,000	123,657,000
59C	20	103동 1,3호	2~3층	4	63,470,109	328,409,891	-	391,880,000	10,000,000	29,188,000	39,188,000	39,188,000	39,188,000	39,188,000	39,188,000	39,188,000	117,564,000
			4~6층	6	63,470,109	335,709,891	-	399,180,000	10,000,000	29,918,000	39,918,000	39,918,000	39,918,000	39,918,000	39,918,000	39,918,000	119,754,000
			7~9층	6	63,470,109	345,449,891	-	408,920,000	10,000,000	30,892,000	40,892,000	40,892,000	40,892,000	40,892,000	40,892,000	40,892,000	122,676,000
			10~11층	4	63,470,109	350,309,891	-	413,780,000	10,000,000	31,378,000	41,378,000	41,378,000	41,378,000	41,378,000	41,378,000	41,378,000	124,134,000
97A	1	103동	1층(복층)	1	104,231,900	461,752,818	46,175,282	612,160,000	10,000,000	51,216,000	61,216,000	61,216,000	61,216,000	61,216,000	61,216,000	61,216,000	183,648,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을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Ⅱ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공고상 타입)	49B	59A / 59B / 59C	97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자 부담)	12,000,000	15,000,000	24,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일정 및 금액에 대해서는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상 명시 예정임.

■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방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중도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 시 (입주지정 기간 내)
49B	12,000,000	1,200,000	10,800,000
59A / 59B / 59C	15,000,000	1,500,000	13,500,000
97	24,000,000	2,400,000	21,600,000

■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계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비용(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349401-04-314135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제 [예 :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 홍길동]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제하여야 합니다. **(예시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 홍길동)**
※ 상기 계좌의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및 확장면적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형 냉매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인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구조 검토등에 의해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난간,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고,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관련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할 경우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및 색상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돌출, 우물천정 디자인 변경, 커튼박스 깊이 축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무상제공품목

구분			49B	59A	59B	59C	97A	비고
가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삼성(AJ040MB1PBC1) 1개소 (거실)	전 타입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제공
	광파 전기오븐(스마트 오븐)	삼성(HSB-N361B) 1개	전 타입					

※ 상기 무상제공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무상제공되는 품목으로, 발코니 미확장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후 무상제공되는 품목에 대한 비용의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은 유상제공품목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과 동일하며,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49B	59A	59B	59C	97A	비고
가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택1	삼성(AJ040MB1PBC1) 1개소 (침실1)	3,025,000	3,025,000	3,025,000	3,025,000	3,025,000	
			삼성(AJ040MB1PBC1) 2개소 (침실1,2)	3,817,000	3,817,000	3,817,000	3,817,000	3,817,000	
			삼성(AJ040MB1PBC1) 3개소 (침실1,2,3)	-	5,621,000	5,621,000	5,621,000	-	
	하이브리드 쿡탑	택1	한샘 BIH3471	660,000	660,000	660,000	660,000	660,000	
			파세코 BIH3471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마감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현관중문	택1	그랜디(일반형)노출레일/브론즈 5T강화유리,블랙	990,000	990,000	990,000	990,000	990,000	
			아델리오(고급형)노출레일/브론즈 8T강화유리,블랙	1,375,000	1,375,000	1,375,000	1,375,000	1,375,000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선택품목	기업은행	093-116710-01-015	㈜경보산업개발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제** [예 : "103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1030801 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은 계약 체결 후 별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특정일 한해 별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통해 안내 할 예정임.

■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계약 후 선택사항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확정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제어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오니 계약 체결 시 실제 설치 위치 및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단열재 적용범위,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및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거실 스텐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는 제외)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당첨된 자

■ 당첨자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 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필수 해당자
		필수	추가 (해당자)		
당첨자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등본표"상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청약자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 위임용", 청약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	대리인	· 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장 또는 서명 가능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2.07.08.(목요일) ~ 07.09.(금요일) 10:00~17:00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방식 및 일정, 운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자격확인 제출서류 일체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사전 제출기한에 제출한 경우 제외)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 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당첨자서류 접수 시 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계약체결 시 인감증명서 제출 제외)
	○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금액15만원)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 과세문서1호 등에 의거 계약체결 시 첨부)
		○	기타 사업주체 요구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위임장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본인 이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 2022.06.23(목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향후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기간 향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5.11.)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com)**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750-33, 2층

■ 분양문의 : 051-554-2979